

“외국의 숙박업 분류체계에 관한 법제분석”



KOREAN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외국의 숙박업 분류체계에 관한 법제분석”

- 일본과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

전 주 열(부연구위원)

법제분석 요약

개요▶▶▶

■ 주요 방한외래객 국적변화에 따른 숙박시설 수요 트렌드가 변화하고 정보통신산업 발전·외래객의 개별자유여행 증가세에 기인한 새로운 유형의 숙박서비스 등장 등 숙박 트렌드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가칭 관광숙박업법 제정을 위한 주요 관광선진국의 숙박관련 법제도를 분석함

■ 일본에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영업을 생활위생이라는 범주에서 다루고 있음

- ◆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도 생활위생에 의한 규율을 받음. 음식점과 같은 업소는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되, 여러 사람이 이용하게 되는 영업장과 영업시설은 생활위생의 개념에 포함됨
- ◆ 일본에서 생활위생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의 공중위생과 식품위생의 영업장소와 영업시설을 합한 개념임, 때로는 환경위생이라고 하여 구분

■ 일본 숙박 관련 법령

내용	비고	
여관업(旅館業)법	법률	
여관업법 시행령	정령	
여관업법 시행규칙	후생성	성령
여관업법 시행규칙등의 규정에 따른 환경위생감시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정한 성령	후생성	고시
여관업 진흥지침	후생성	고시
관광권의 정비에 의한 관광여객의 내방 및 체재의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관광권의 정비에 의한 관광여객의 내방 및 체재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령	
관광권의 정비에 의한 관광여객의 내방 및 체재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 교통성	성령
국제관광호텔정비법	법률	
국제관광호텔정비법 시행령	정령	
국제관광호텔정비법 시행규칙	국토 교통성	성령

- 프랑스에서는 숙박업을 ‘관광법전’(Code du tourisme)에서 규율함
 - ◆ 프랑스 숙박업의 분류는 2000년부터 기존에 관광 관련 법령을 통합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 현재의 체계를 완성한 관광법전 법률부 제3권 (Livre III) ‘장치 및 부대시설’에서 규율
 - ◆ 관광법전에서 예정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크게 호텔과 캠핑장을 포함한 토지조성(캠핑장 등)을 큰 규율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숙박업은 그 외 숙박서비스로 구분
 - ◆ 그 외 숙박서비스로 묶은 것은 관광 레지던스(Résidences de tourisme), 재활성화 관광숙박시설(Immobilier de loisir réhabilité) 등 여섯가지이고 각각에 대해 법전의 한 장(chapitre)으로 구분하여 규정을 두고 있음

CONTENTS

I. 일본의 숙박업 현황과 법제	4
1. 시설	4
2. 숙박과 관련된 법률	5
3. 숙박업법상 숙박의 종류의 허가 등	6
4. 여관종류에 따른 구조설비 규정	16
5. 국제관광 호텔정비법상의 등록	22
6. 일본 호텔의 현황	25
II. 프랑스 법령상 숙박업 분류체계	30
1. 숙박업 구분 법령 현황	30
2. 개별 숙박시설 규정	31

01 일본의 숙박업 현황과 법제

01 서설

- 2008년까지 방일외래객 수는 방한외래객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9년 이후에는 방한외래객 수가 방일외래객 수를 초과. 2011년 방일외래객수가 급감한 요인은 2010년 하반기 슈퍼엔고현상지속(일본 엔화가치의 급상승 현상)과 2011년 3월 도호쿠대지진 및 후쿠시마원전사고발생 등으로 분석¹⁾. 관광객의 감소는 숙박업계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임
- 일본 숙박업계는 가족경영사업자가 많고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곳도 적지 않음.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에서는 여행형태가 단체여행에서 개인·그룹여행으로 전환. 이런 변화에 따라 숙박시설의 가동률이 낮아지고 연회 등이 감소하면서 숙박비 이외의 부대 매출이 감소. 특히 대형 숙박업체는 1960년-1990년대 말에 걸쳐서 단체여행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객실을 늘리는 등 설비투자를 대규모로 추진한 결과, 고정비에 따른 수익악화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곳이 적지 않은 상황임
- 일본의 이러한 숙박경제의 상황에서 일반인들은 숙박의 종류를 호텔과 료칸으로만 구분함. 료칸은 일본어로 “旅館”으로 에도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적인 일본의 숙박형태임. 현재는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고 있음
- 실제로 이러한 형태만 숙박으로 보는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숙박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

1) 2011년 3월 방일외래객 : 50.3% 급감(전년동월대비)



02 숙박과 관련된 법률

- 일본에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영업을 생활위생이라는 범주에서 다루고 있음
 -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도 생활위생에 의한 규율을 받음. 음식점과 같은 업소는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되, 여러 사람이 이용하게 되는 영업장과 영업시설은 생활위생의 개념에 포함됨
 - 일본에서 생활위생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의 공중위생과 식품위생의 영업장과 영업시설을 합한 개념임, 때로는 환경위생이라고 하여 구분
- 숙박 관련 법률
 - 일본에서의 숙박관련 기본법은 여관업법에서 규정
 - 일본 숙박관련 법령은 다음 표와 같음

[표 1] 숙박관련 법령

내용	비고	
여관업(旅館業)법	법률	
여관업법 시행령	정령	
여관업법 시행규칙	후생성	성령
여관업법 시행규칙등의 규정에 따른 환경위생감시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정한 성령	후생성	고시
여관업 진흥지침	후생성	고시
관광권의 정비에 의한 관광객의 내방 및 체재의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관광권의 정비에 의한 관광객의 내방 및 체재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령	
관광권의 정비에 의한 관광객의 내방 및 체재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성	성령



국제관광호텔정비법	법률	
국제관광호텔정비법 시행령	정령	
국제관광호텔정비법 시행규칙	국토 교통성	성령

- 숙박관련 법률을 분석하여 숙박의 종류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03 숙박업법상 숙박의 종류의 허가 등

1. 숙박업법

- 일본의 숙박업은 여관업 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여관업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1948년 공포.시행)
- 동법에서는 적절한 이유 없이 숙박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안전, 위생수준의 유지, 향상, 다양화하는 이용자의 수요에 대응한 시설, 서비스에 제공에 힘쓰도록 규정
- 또한 국제관광의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외국인 숙박시설에 대해 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이들 시설의 정비를 꾀하며 이와 함께 외래객에 대한 등록 호텔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촉진하는 등을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숙박의 의미
 - 여관업법이란 숙박료를 받고 사람을 숙박시키는 영업을 의미함
 - 숙박이란 침구를 사용해 시설을 이용하는 것 이며 생활의 본거가 아닐 것을 주된 개념요소로 하며, 숙박과 주거는 상반된 개념으로 주거의 목적성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임





- 여관업은 사람을 숙박시키는 것이며, 생활이 본거지를 두는 경우 예를 들어, 아파트나 셋방 등은 여관업이 아니라고 하고 있음
 - 또한 숙박료를 받는 것이 요건이며, 숙박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는 여관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그리고 숙박료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침구와 방의 사용료로 간주되는 것이 포함됨. 예를 들면 휴게료는 물론 침구사용료, 침구 등의 세탁비, 광열수도비도 숙박료로 간주
 - 또한 숙박시설이 설치된 연수시설 등이 연수비를 징수하고 있는 경우에도, 예를 들어 당해 시설에서 숙박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 연수비를 징수하는 등 당해 연수비 중에 숙박료 상당의 것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한 연수비에서는 숙박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
 - 다만 식비나 TV 사용료 등 반드시 숙박에 부수되지 않는 서비스의 대가는 숙박료에 포함되지 않음
- 기본적인 정의로는 여관업법의 제2조에 규정된 여관업으로 시설의 구조나 설비에 의해서 호텔영업, 여관영업, 간이숙소영업, 하숙영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2. 숙박업법상 숙박의 정의

- 여관업법에는 호텔영업, 여관영업, 간이숙박소영업, 하숙영업의 4가지가 있음(여관업법 제2조)
- 호텔영업
 - 서양식의 구조 및 설비를 주로 하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료를 받고 사람을 숙박시키는 영업
 - 간이숙박 영업 및 하숙영업 이외의 것을 말함



- 여관영업
 - 와식(일본식)의 구조 및 설비를 구조로 하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료를 받고 사람을 숙박시키는 영업
 - 간이숙박소 영업 및 하숙영업 이외의 것을 말함

- 간이숙박영업²⁾
 - 숙박하는 장소를 여러 사람이 공용하는 구조 및 설비를 주로 하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료를 받고 사람을 숙박시키는 영업
 - 하숙영업 이외의 것을 말함

- 하숙영업
 -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숙박료를 받고 사람을 숙박시키는 영업

- 기타 생활숙박업소
 - 위클리맨션
 - 기존의 아파트나 맨션의 빈방을 1내지 2주 단위로 임차하는 형태이며 우리나라의 서비스드레지던스와 유사한 형태의 숙박업
 - 우리나라의 서비스드레지던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편입되기 어려워 단속의 문제와 호텔업과의 영업에 대한 갈등이 있으나, 일본의 경우 숙박을 하게 되는 경우 모두 여관법에 의해 위생관리기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위클리맨션도 여관법의 적용 대상
 - 영업형태는 여관업과 임대업의 혼합된 형태로 주 이용고객은 회사의 단기출장자, 연수생 등으로 구분

2) 숙박 목적으로 하는 휴게텔의 경우 간이숙박영업에 해당함. 또한 펜션, 산장, 유스호스텔 등도 간이숙박소 영업에 속함





- 시설활용은 기존의 아파트, 맨션의 빈방 또는 전용으로 신축한 방을 임대. 이용일수 단위는 일주일 이상으로 최장 제한은 없으나, 실제로는 1-2주간 단기 이용자들이 대부분. 객실에는 조시설비, 냉장고, 텔레비전, 욕실, 침구류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설비가 완비. 실내로는 전화기, 가구 등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으며, 이용기간 중에 실내의 청소 등의 유지관리는 이용자가 부담. 린넨서비스 없으며, 광열비, 수도비 등은 개별 미터가 측정량에 따라 계약해지시에 별도 정산
- 위장러브호텔
 - 일본에서는 개업 시 비즈니스호텔로 영업허가를 취득하여, 후에 시설 개조 등에 의해 시설의 외관을 변형하거나 무인 체크인/아웃이 가능한 형태로 영업을 하는 형태로 일본의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점포형성풍속특수영업의 대상이 되는 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거지역이나 학교주변에서도 영업을 가능
 - 설비기준에 관해서는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소관기관인 경찰청, 소방청 등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조정

3. 숙박업의 허가

- 허가권자 : 도도부현지사
 - 여관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도도부현지사(보건소를 설치하는 시 또는 특별구에서는 시장 또는 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여관업법 제3조 제1항본문)
 - 다만 호텔영업, 여관영업 또는 간이숙박소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시설에 하숙영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동법 제3조 제1항 단서)



● 불허가 요건

– 도도부현지사는 전항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에 관련되는 시설의 구조 설비가 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해당 시설의 설치 장소가 공중위생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신청자가 다음의 각호의 한 가지에 해당할 때는 동 항목으로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동법 제3조 제2항)

- 1)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따른 처분에 위반하여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끝내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2) 제8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가 취소되고 취소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법인으로서는 그 업무를 실행하는 임원 중에 전 2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시설의 설치 장소가 다음에서 제시하는 시설의 부지 (이들 용도로 제공하는 것이 결정된 토지를 포함함. 이하 동일) 주위, 대략 100미터의 구역 내에 있는 경우, 그 설치에 의해 당해 시설의 청결한 시설 환경에 심각한 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동법 제3조 제3항)

- 1) 학교교육법³⁾ 제1조에 규정하는 학교
- 2) 아동복지법⁴⁾ 제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아동복지시설

3) 학교교육법 제1조에서 학교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특별지원학교,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를 의미한다.

4) 아동복지법 제7조 제1항에서 아동복지시설이란 조산시설, 유아원, 모자생활지원시설, 보육소, 아동후생시설, 장애아 입소시설, 아동발달 지원센터, 정보장애아 단기치료시설, 아동자립 지원시설 및 아동가정지원센터를 말한다.





3) 사회교육법⁵⁾ 제2조에 규정하는 사회교육에 관한 시설, 기타 시설

● 의견청취 및 통지의무

－ 의견청취

- 도도부현지사는 전항각호에서 제시하는 시설부지의 대략 100미터 구역 내의 시설에 제1항의 허가를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시설의 설치에 의해 전항 각호에서 제시하는 시설의 청순한 시설환경에 심각한 해를 미칠지 아닐지에 대해, 학교에 대해서는 당해 학교가 대학부속의 국립학교(학교교육법 제2조 제2항⁶⁾에 규정하는 국립학교를 말함) 일 때는 당해 대학의 학교장, 고등전문학교일 때는 당해 고등전문학교의 교장, 고등전문학교 이외의 공립학교 일 때는 당해 학교를 설치하는 지방공공단체의 교육위원회, 고등전문학교 이외의 사립학교일 때는 학교교육법이 정하는 그 소속 관청의 의견을, 아동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행정부의 의견을 전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도도부현의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당해 조례에서 정하는 자의 견을 구해야 함

－ 통지의무

-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항의 불허가 결정을 한 경우 도도부현지사는 이유를 붙혀 서면을 통해서 그 취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함(법 제3조 제5항)

5) 사회교육법 제2조에서 사회교육시설이란 학교교육법에 근한 학교의 교육과정으로서 실시되는 교육활동을 제외한 주로 청소년 및 성인에 대해 실시되는 조직적인 교육활동(체육 및 레크레이션 활동을 포함한다)을 의미한다.

6) 학교교육법 제2조 제2항에서 학교는 국가(국립대학 법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립대학 법인 및 독립행정법인 국립고등전문학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지방공공단체(지방 독립행정 법인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공립대학 법인을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도 같음) 및 사립학교 법인법 제3조에 규정하는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칭한다)만이 이것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법률에서 국립학교란 국가가 설치하는 학교를, 공립학교란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학교를, 사립학교란, 학교법인이 설치하는 학교를 말한다.

- 부관가능성

- 제1항의 허가에는 공중 위생상 또는 선량한 풍속의 보유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4. 합병 및 분할

-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 승계

- 전조 제1항의 허가를 받고 여관업을 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인 법인의 합병의 경우(영업자인 법인과 영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고 영업자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를 제외)또는 분할의 경우(해당 여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한함)에서 해당 합병 또는 분할에 대해서 도도부현지사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분할에 의해 해당 여관업을 계승한 법인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함

- 승계 준용

- 전조 제2항(신청자에 관계 부분에 한함)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은 전항의 승인에 대하여 준용
- 이 경우 동조 제2항 중 “신청자”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에 따른 해당 여관업을 승계한 법인”으로 함

5. 여관업의 상속

- 상속

-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상속인이 둘 이상일 경우, 그 전원의 동의에 의한 해당 여관업을 승계해야 할 상속인을 선정했을 경우 그 사람. 이하 동일)이 피상속인의 하던 여관업을 계속 경영하려고 할 때는 그 상속인





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60일 이내에 도도부현지사에게 신청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함(동법 제3조의3 제1항)

- 상속 간주

- 상속인이 전항의 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그 승인을 받은 날 또는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날까지는 피상속인에게 한 제3조 제1항의 허가는 그 상속인에 대해서 한 것으로 봄(동법 제3조의3 제2항)

- 준용

- 제3조 제2항(신청자에 관련된 부분에 한함)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승인에 있어서 준용함(동법 제3조의3 제3항)

6. 여관업자의 의무

- 서비스 향상의무

- 영업자는 여관업 영업의 시설 및 숙박에 관한 서비스에 대해서 안전 및 위생 수준 유지 및 향상에 주력
- 여관업 분야에서의 이용자의 수요가 고도화
- 다양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영업의 시설 정비 및 숙박에 관한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야 함(동법 제3조의4)

- 위생시설 향상의무

- 영업자는 영업의 시설에 대해서 환기, 채광, 조명, 방습 및 청결 기타 숙박인원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동법 제4조 제1항)
- 위생조치 기준에 대해서는 도도부현 조례로 정함(동법 제4조 제2항)



- 제1항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영업자는 영업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름(동법 제4조 제3항)

- 숙박시킬 의무

- 영업자는 다음 사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박을 거부해서는 아니됨(동법 제5조)
 - 숙박하려는 자가 명백히 전염병에 걸렸다고 인정될 때
 - 숙박하려는 자가 도박, 기타 위법행위 또는 풍기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숙박시설에 여유가 없을 때
 - 기타 도도부현이 조례로 정하는 이유가 있을 때

- 명부 비치의무

- 영업자는 숙박자명부를 비치하며, 이에 투숙객이 성명, 주소, 직업 기타 사항을 기재하고 해당직원이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출해야 함
- 숙박자는 영업자로부터 청구 있을 때는 전항에 규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함

7. 기타

- 현장검사

- 도도부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영업자나 기타 관계자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당해직원에게 영업시설에 출입, 구조설비 혹은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동법 제7조 제1항)
- 해당 직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검사를 함에 있어서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 이를 제시(동법 제7조 제2항)





- 개선명령

- 도도부현지사는 영업의 시설의 구조 설비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영업자에게 상당의 기간을 정하고 해당 시설의 구조 설비를 그 기준에 적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음(동법 제7조의2)

-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 도도부현지사는 영업자(영업자가 법인일 경우에 그 대표자를 포함함), 대리인, 사용자 기타 종업자가 당해 영업에 관해 다음에 제시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허가를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동법 제8조 제1항)
 - 형법 제174조⁷⁾, 제175조, 제182조⁸⁾: 공연외설, 외설물 반포 등, 음란행위 권유
 - 풍속영업 등의 규정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1948년 법률 제1호)에 규정하는 죄 : 동법 제2조 제4항의 접대음식 등 영업에 관한 것에 한함
 - 매춘방지법(1956년 법률 제118호) 제2장에 규정하는 죄 : 권유, 주선하는 행위, 곤란 등에 의한 성매매, 대상의 수수, 매춘을 시키는 계약, 장소 제공, 매춘을 시키는 업, 자금 등의 제공
 -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52호) : 제2장에 규정하는 죄
- 위의 처분에 관련된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13조의 통지는 청문 기일 또는 변명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 기한(구두에 의한 변명의 기회 부여를 할 경우 그 일시)일주일 전까지 통지(동법 제9조 제1항)
- 청문공개(동법 제9조 제2항)

7) 공공연한 외설행위를 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8) 영리의 목적으로 음란행위의 상습 없는 여자를 권유해서 간음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처벌
 -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 이하의 벌금
 -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해서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여관업을 경영한 자
 -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5천엔 이하의 벌금
 - 제5조 또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 또는 당해 직원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자
 - 구류 또는 과료
 -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해서 동조 제1항의 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자
 - 벌금형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해서 제10조 또는 제11조의 위반행위를 했을 때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 병과

04 여관종류에 따른 구조설비 규정

1. 호텔영업

- 객실의 수 : 10개 이상일 것
 - 양실의 수는 객실 총수의 2분의 1을 넘을 것
- 양실의 폭은 2M 이상일 것(2.5미터 이상이 바람직)
- 서양식 구조 설비에 의한 객실 요건
 - 1객실 면적이 9㎡ 이상일 것





- 침구는 서양식의 것일 것
- 출입구 및 창문은 자물쇠를 채울 수 있을 것
- 출입구 및 창문을 제외하고 객실과 다른 객실, 복도 등과의 경계는 벽 구조일 것
- 일본식의 구조설비에 의한 객실은 다음에 해당할 것
 - 일본식의 구조설비에 의한 객실의 바닥면적은 각각 7평방미터 이상일 것
- 숙박하려는 자와 면접에 적합한 현관카운터 기타 이와 비슷한 설비를 갖추는 것
- 적당한 환기, 채광, 조명, 방습 및 배수의 설비를 갖추는 것
- 숙박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당한 수의 서양식 욕실 또는 샤워실을 갖추는 것
- 숙박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적당한 규모의 세면 설비를 갖추는 것
- 당해시설의 규모에 대응한 적당한 난방의 설비를 갖추는 것
- 화장실은 수세식이며 좌변식이고, 공동사용에 있어서는 남자용 및 여자용의 구분이 있을 것
- 해당시설의 설치장소가 법제3조 제3항 각호에 제시하는 시설(이하 “제1조 학교등”이라 함)부지(이런 용도로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한 땅을 포함함. 이하 동일)의 주위, 대체로 100M 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1조 학교 등에서 객실 또는 손님에게 춤을 추고, 손님들에게 음식을 시키는 홀 또는 사행심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을 놀이를 하는 홀 기타 설비의 내부를 내다보는 것을 가릴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것
- 기타 도도부현(보건소를 설치하는 시 또는 특별구에 있어서는 시 또는 특별구역, 이하 동일) 조례로 정하는 구조설비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여관영업

- 객실의 수 : 5실 이상일 것
 - 화실의 수는 객실 총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 일본식 구조 설비 : 객실의 바닥면적은 각각 7평방미터 이상일 것
- 서양식의 구조설비에 의한 객실
 - 1객실 면적이 9㎡ 이상일 것
 - 침구는 서양식의 것일 것
 - 출입구 및 창문은 자물쇠를 채울 수 있을 것
 - 출입구 및 창문을 제외하고 객실과 다른 객실, 복도 등과의 경계는 벽 구조일 것
- 숙박하려고 하는 자와의 면적에 적합한 현관카운터 기타 이와 비슷한 설비를 갖출 것
- 적당한 환기, 채광, 조명, 방습 및 배수의 설비를 갖출 것
- 해당시설에 근접해서 공중목욕탕이 있는 등 목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을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 숙박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당한 규모의 목욕설비를 갖출 것
- 숙박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당한 규모의 세면 설비를 갖출 것
- 적당한 수의 화장실을 갖출 것
- 당해시설의 설치장소가 제1조 학교 등 부지의 주위, 대체로 100M 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1조 학교 등에서 객실 또는 손님에게 춤을 추고, 손님들에게 음식을 시키는 홀 또는 사행심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을 놀이를 하는 홀 기타 설비의 내부를 내다보는 것을 가릴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기타 도도부현이 조례로 정하는 구조설비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간이숙소영업

- 객실의 총 바닥면적 : 30평방미터 이상일 것
 - 객실의 폭은, 2미터 이상을 가질 것
 - 객실은 수용정원에 따라 충분한 넓이를 가지고 있을 것





- 객실의 바닥 면적은, 대략 4.8평방미터 이상 일 것(7평방미터 이상이 바람직)
- 계층식 침대가 있을 경우 상단과 하단의 간격은 대체로 1미터 이상일 것
 - 침대 1대당 바닥 면적은, 3.0평방미터 이상의 넓이를 가질 것. 단, 층계식 침대에 대해서는 1대(2층을 1대로 환산)당의 바닥 면적은, 대략 4.5평방미터 이상의 넓이를 가질 것
 - 층계식 침대는 2층으로 하며, 그 폭은 0.9평방미터 이상, 길이 1.85이상의 넓이를 가질 것(폭1.0미터, 길이2.1미터 이상이 바람직 함)
 - 층계식 침대의 상단과 하단 및 최상단과 천장 사이의 간격은 각각 대략 1미터 이상으로 하며, 또한 하단의 침대는 바닥 면으로부터 매트리스 위 면까지의 높이가 0.35미터 이상 일 것
 - 층계식 침대는 다른 장소로부터의 광선을 피하는 것이 가능한 커튼 등을 비치하는 등 적당한 구조설비 일 것
 - 층계식 침대를 두는 천장은, 바닥 면으로 대략 2.5미터 이상의 높이에 난간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층계식 침대(상단)의 외측의 가장자리에는, 숙박자가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사판에서 대략 0.2미터 이상 높이의 난간을 설치하는 등 적절히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적당한 환기, 채광, 조명, 방습 및 배수의 설비를 갖추 것
- 해당시설에 근접해서 공중목욕장이 있는 등 목욕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숙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규모의 목욕 설비를 갖추 것
- 투숙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당한 규모의 세면 설비를 갖추 것
- 적당한 수의 화장실을 갖추 것
- 기타 도도부현이 조례로 정하는 구조설비의 기준에 적합할 것



4. 하숙영업

- 객실의 개수는 3실 이상 일 것
 - 객실은 수용정원에 따라 충분한 넓이를 가질 것
 - 1객실의 바닥 면적은 7평방미터 이상일 것(9평방미터 이상이 바람직 함)
 - 객실의 폭은, 2미터 이상을 가질 것
 - 객실에는 침구 및 숙박자의 휴대물품 등을 충분히 수납 할 수 있는 벽장
 - 등의 보관설비를 설치 할 것
- 적당한 환기, 채광, 조명, 방습 및 배수의 설비를 갖추어 것
- 해당시설에 근접해서 공중목욕장이 있는 등 목욕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숙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규모의 목욕 설비를 갖추어 것
- 투숙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당한 규모의 세면 설비를 갖추어 것
- 적당한 수의 화장실을 갖추어 것

5. 구조설비 기준의 특례

- 구조설비 기준의 특례
 - 호텔영업, 여관영업 또는 간이숙소영업의 시설 중 계절적으로 이용되는 것, 교통이 현저하게 불편한 지역에 있는 것,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정하는 기준에 관계해서 후생노동성령으로 필요한 특례를 정할 수 있음
- 특례가 적용되는 시설
 - 캠프장, 스키장, 해수욕장 등에서 특정계절에만 영업하는 시설
 - 교통이 현저하게 불편한 지역에 있는 시설로서 이용도가 낮은 것





- 체육회, 박람회 등 대문에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 농림어업자가 농산어촌 체험형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에 규정하는 농림어업체험민박업을 하는 시설
- 다음에 지시하는 요건의 모든 것에 해당하는 시설
 - 문화재보호법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한 문부과학대신에 선정된 중요 전통적 건축물군보존지구내에 있는 것
 -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전통적 건축물군을 이루고 있는 건축물 등(이하에서 “전통적 건축물”이라 함)에 있을 것
 - 전통적 건축물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 제1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숙박하려는 자와 면접에 맞는 현관카운터 기타 이와 비슷한 설비를 마련하기가 어려울 것
 - 현관카운터 등에 대체하는 기능을 가진 설비를 마련하는 것 이외 기타 선량한 풍속의 유지를 위한 조치가 강구되고 있을 것
 - 사고가 발생한 때 기타 긴급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체제가 정비될 것

● 특례규정 표

[표 2] 특례규정 표

전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시하는 시설	영 제1조 제1항 제1호, 제4호 ㄴ(1), 제3호 및 제4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바닥면적에 관한 부분에 한함) 및 제4호 내지 제3항 제1호의 기준
전항 제4호에 제시하는 시설	영 제1조 제3항 제1호의 기준
전항 제5호에 제시하는 시설	영 제1조 제2항 제4호의 기준



05 국제관광 호텔정비법상의 등록

1. 목적

- 이 법률은 호텔 기타 외국 관광객 숙박 시설에 대해서 등록 제도를 실시하고, 이들 시설의 정비를 도모하고 아울러 외국 손님에 대한 등록 호텔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촉진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외국 손님에 대한 대접을 충실하고, 국제 관광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호텔의 등록

- 등록권자 : 관관청 장관
- 등록 신청
 - 호텔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제시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등록 기관에 제출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이름
 - 호텔의 명칭 및 소재지
 - 구조 및 설비별의 객실수, 수용인원 기타 국토교통성령이 정한 호텔의 시설에 관한 사항
 - 제10조에 규정하는 외국 손님 접대 선임자의 이름
 - 전항의 신청서에는 호텔의 도면 기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
- 등록의 거부
 - 등록실시시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해야 함





- 신청에 관련된 호텔 시설 및 숙박에 관한 서비스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 객실의 구조, 설비 및 수가 외국 손님의 숙박에 적절한 것으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 로비 기타 다른 손님의 공용에 제공하는 실, 식당의 구조, 설비 및 규모가 외국 손님의 숙박에 적절한 것으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 기타 외국손님의 쾌적성 및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 신청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 손님접대 선임자를 확실히 선임한다고 인정되지 않는 사람일 때
 - 신청자가 이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는 것이 없어진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일 때
 - 신청자가 성년피후견인, 피보좌인 또는 파산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일 때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 중에 전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 신청에 관련된 호텔마다 호텔업의 경영이 현저한 부실 또는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
- 등록의 취소
- 등록실시기관은 등록호텔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 호텔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해야 함
 - 제6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중의 하나에 해당하기에 이르렀을 때
 - 부정한 수단으로 제3조의 호텔 등록을 받았을 때
 - 관관청장관은 등록호텔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근거한



명령 또는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했을 때는 해당 등록호텔에 대해서 등록을 한 등록실시기관에게 그 이유를 고지하고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음

- 등록실시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호텔에 대해서 등록취소 명령을 받았을 때는 신속히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함
-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전항의 경우에 준용

- 등록의 말소

- 등록실시기관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전부를 폐지한다는 신고가 있을 때, 전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등록 말소 신청이 있을 때는 해당 등록 호텔을 등록말소하는 동시에,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함

3. 여관의 등록

- 여관업을 하는 자는 여관마다 등록기관이 하는 등록을 받을 수 있음
- 호텔의 등록기준을 준용

06 일본 호텔의 현황

1. 숙박여행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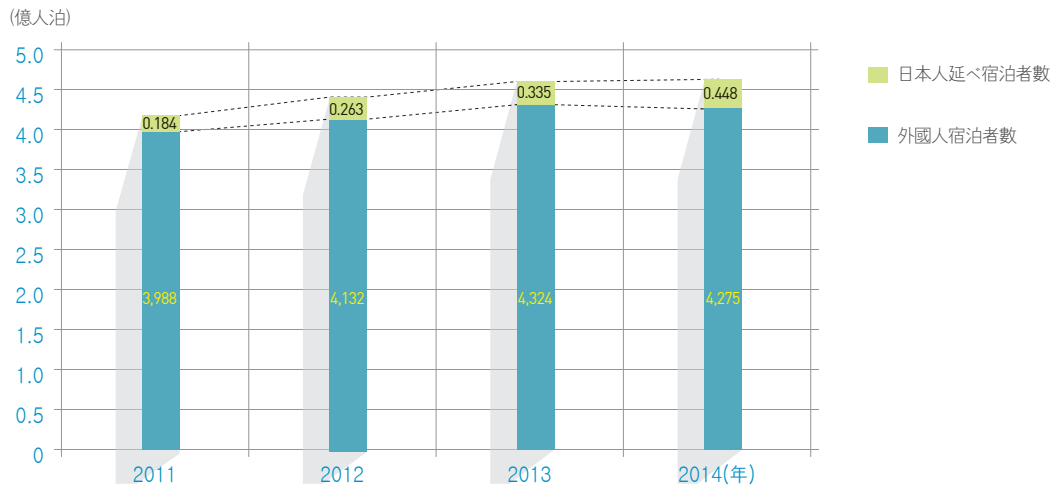
- 일본 전체 현황
 - 일본의 총 숙박 인원 수에 대해서는 2014년(평성 26년)은 4억 7,232만명 (전년 대비 1.4%증가)





- 그 가운데 일본인 총 숙박 인원 수는 4억 2,750만명(전년 대비 1.1%감소), 외국인 총 숙박 인원 수는 4,482만명(전년 대비 33.8%증가)
- 총 숙박 자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숙박 인원 수의 비율은 9.5%로 증가하고 외국인 총 숙박 인원 수의 성장이 일본인 총 숙박 인원 수의 감소를 보충할 형태

[그림 1] 일본인, 외국인 전체 숙박자 수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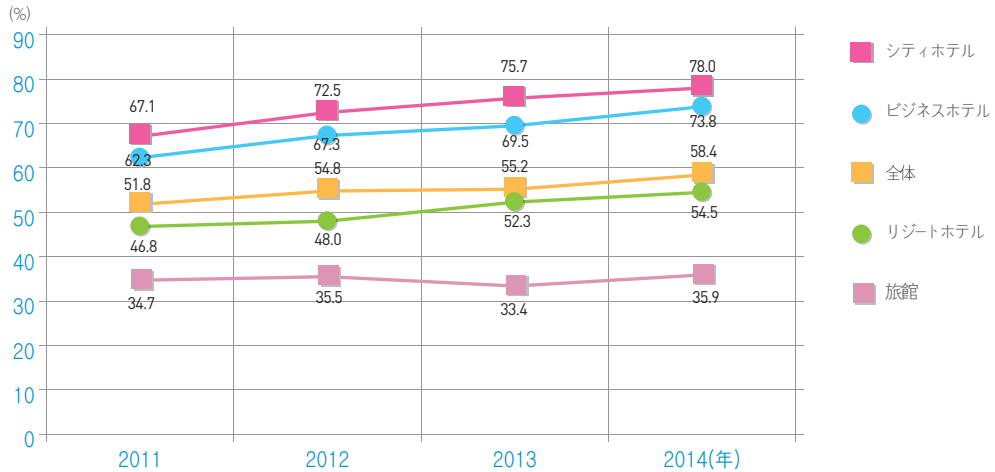
(注) 1. 観光庁「宿泊旅行統計調査」による.
2. 2014年(平成26年)は速報値

● 객실 점유율

- 2011년(헤세이 23년)이후의 객실 점유율은 전국에 대해서는 상승 경향에 있어 2011년(헤세이 23년)의 51.8%에서 2014년(헤세이 26년)의 58.4%
- 숙박 시설 유형별의 객실 점유율은 시티 호텔 비즈니스 호텔, 리조트 호텔에 대해서는 상승 경향에 있지만 여관은 보합세
- 특히, 시티 호텔 비즈니스 호텔은 2011년(헤세이 23년)부터 2014년(헤세이 26년)기간에 10%포인트 이상 상승하고 각각 78.0%, 73.8%에 달함



[그림 2] 숙박시설유형별 객실가동율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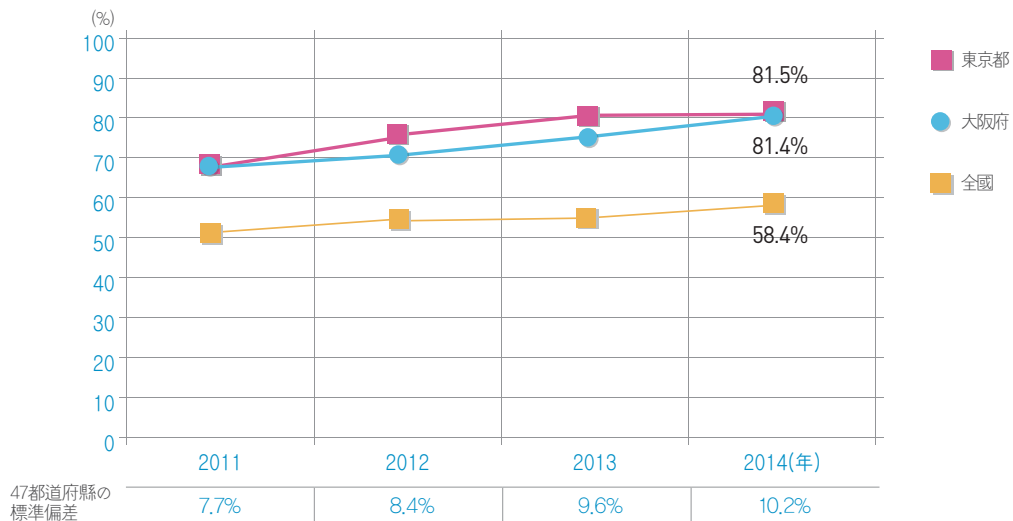


(注) 1. 観光廳「宿泊旅行統計調査」による.
2. 2014年(平成26年)は速報値

● 지역별 현황

- 도쿄도와 오사카부의 2대 도시의 객실 점유율은 현저하게 상승, 2011년 도쿄도가 68.0%, 오사카부가 68.2%에서 2014년에는 각각 81.5%, 81.4%로 80%를 넘는 수준

[그림 3] 객실가동률의 추이



(注) 1. 観光廳「宿泊旅行統計調査」による.
2. 2014年(平成26年)の数値は速報値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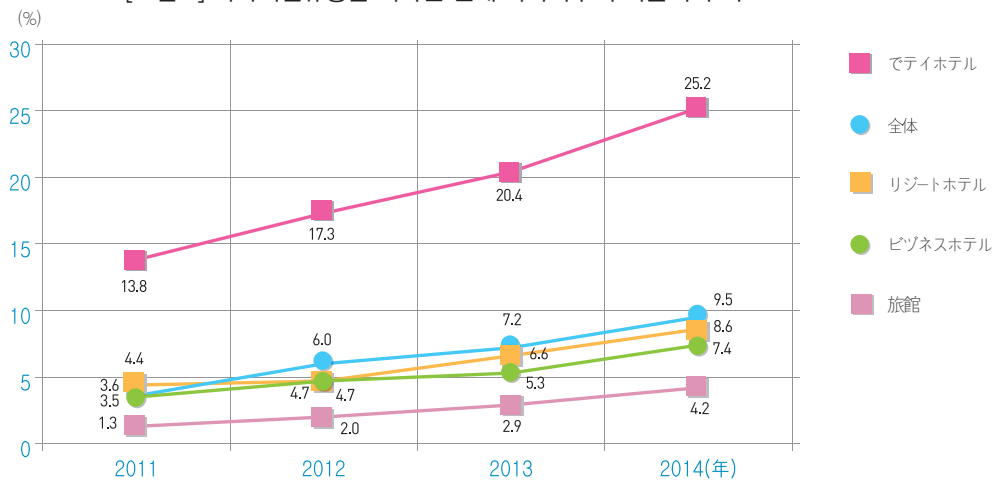


- 47개 도도부현의 가동률의 표준 편차는 2011년 이후 7.7%에서 2014년은 10.2%로 객실 점유율의 격차가 커졌음

- 총숙박 인원수에 차지하는 외국인 비율

- 총 숙박 인원 수에 차지하는 외국인 총 숙박 인원 수의 비율의 추이는 2011년이후에 전국에 대해서는 상승 경향에 있어 2011년의 4.4%에서 2014년에는 9.5%임

[그림 4] 숙박시설유형별 외국인 전체 숙박자수의 비율의 추이



(注) 1. 観光廳「宿泊旅行統計調査」による。
2. 2014年(平成26年)は速報値

- 시티 호텔은 외국인 총 숙박 인원 수의 비율이 높고 2011년은 13.8%였지만 2014년에는 25.2%로 투숙객의 4사람에 1사람이 외국인임

2. 숙박시설 현황

- 기존의 5구분에서 현재는 6구분으로 통계조사 중에 있어 이를 기준으로 활용함



- 아래의 표와 전체적인 숙박자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2015년 7월 기준으로 증가한 것은 간이숙소의 증가 때문임. 만약 간이숙소를 제외한다면 지속적인 감소가 보임
- 숙박시설 유형별시설수(6구분)

[표 3] 숙박시설 수

시설소재지 (47구분 및 운수국 등)	총 숙박시설수	숙박시설 유형(6구분)					
		여관	리조트 호텔	비즈니스 호텔	시티호텔	간이 숙소	회사, 단체의 숙박소
2015년 7월	48,760	21,070	2,610	7,200	1,070	14,470	2,340
2014년 1월	35,930	22,820	2,520	7,150	1,040		2,400
2013년 1월	37,780	24,540	2,690	7,170	1,070		2,310
2012년 1월	38,890	25,840	2,640	7,190	1,020		2,200

3. 숙박시설별 외국인 숙박현황

- 숙박시설 유형별 외국인 전체 숙박자수를 파악하고자 함
- 외국인 숙박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기존의 숙박시설의 유형을 5구분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6구분으로 변경되어 기존 간이숙소에 대한 통계는 없음





[표 4] 숙박시설유형별 외국인 전체 숙박자수

시설소재지 (47구분 및 운수국 등)	총 숙박자 수 ⁹⁾	숙박시설 유형(6구분)					
		여관	리조트 호텔	비즈니스 호텔	시티호텔	간이 숙소	회사, 단체의 숙박소
2015년 7월	45,924,800	8,794,020	6,329,360	19,288,760	7,516,130	2,918,240	1,056,870
2014년	473,501,950	103,390,900	67,784,200	194,300,010	75,472,560		8,798,270
2013년	465,893,370	105,603,670	69,235,130	184,020,920	72,783,430		10,404,610
2012년	439,495,120	105,864,680	65,015,400	169,792,930	67,376,190		8,810,800

[표 5] 시설소재지, 숙박시설유형별 이용객실수

시설소재지 (47구분 및 운수국 등)	이용 객실수 ¹⁰⁾	숙박시설 유형(6구분)					
		여관	리조트 호텔	비즈니스 호텔	시티호텔	간이 숙소	회사, 단체의 숙박소
2015년 7월	28,383,130	3,555,680	2,604,270	15,846,820	4,869,290	1,118,570	370,310
2014년	283,201,740	41,431,160	28,460,140	160,057,870	49,690,790		3,561,780
2013년	276,121,160	41,675,230	28,536,970	153,027,620	48,859,220		4,022,120
2012년	261,735,080	42,431,820	26,691,270	142,998,330	45,978,210		3,635,450

9) 숙박 시설 유형 미상 및 간이 숙소를 포함

10) 宿泊施設タイプ不詳を含む。



02 / 프랑스 법령상 숙박업 분류체계

01 숙박업 구분 법령 현황

- 프랑스에서는 숙박업을 ‘관광법전’(Code du tourisme)에서 규율함
 - 프랑스 숙박업의 분류는 관광법전 법률부 제3권(Livre III) ‘장치 및 부대 시설’에서 규율
 - 프랑스 관광법전은 2000년부터 기존에 관광 관련 법령을 통합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 현재의 체계를 완성
 - 현재 본 법전은 아래와 같이 네 개의 권(livre)으로 이루어져 있음

제1권: 관광 관련 조직 일반
제2권: 관광 행사와 직업
제3권: 관광시설과 관광지 조성
제4권: 바캉스 재정지원과 관광 조세특례

- 가운데 숙박업 분류에 관한 사항은 제3권 ‘관광시설과 관광지 조성’에 아래와 같은 목차로 편재

제3권: 관광시설과 관광부지조성(Equipements et aménagements)
제1절: 호텔, 레스토랑, 카페 및 음료 소매점

- 제1장: 호텔
- 제2장: 없음
- 제3장: 카페 및 음료 소매점
- 제4장: 무도장(dance)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음료 소매점





제2절: 호텔 및 캠핑장 이외의 숙박시설

제1장: 관광레지던스(Résidences de tourisme)

제2장: 재활성화 관광숙박시설(Immobilier de loisir réhabilité)

제3장: 관광 레지던스 빌라주(Villages résidentiels de tourisme)

제4장: 부대시설포함 세대 임대와 민박(Meublés de tourisme et chambres d'hôtes)

제5장: 바캉스 빌라주와 바캉스 패밀리 하우스(Villages et maisons familiales de vacances)

제6장: 산악 쉼터(Refuges de montagne)

제7장: 숙박시설 명칭 사용

제3절: 캠핑장, 카라반 및 기타 부대시설

(이하 생략)

- 관광법전에서 예정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크게 호텔과 캠핑장을 포함한 토지 조성(캠핑장 등)을 큰 규율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숙박업은 그 외 숙박서비스로 구분
 - 그 외 숙박서비스로 묶은 것은 관광 레지던스(Résidences de tourisme), 재활성화 관광숙박시설(Immobilier de loisir réhabilité) 등 여섯가지이고 각각에 대해 법전의 한 장(chapitre)으로 구분하여 규정을 둠
 - 제7절에서 위 각 숙박시설의 명칭을 사용할 때,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명칭 사용을 금지

02 개별 숙박시설 규정

- 2015년 5월 18일에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8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행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사업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있는 관광숙박업은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만을 뜻함(제3조 제1항 제2호)



- 한편 ‘야영장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분류하고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관광숙박업과 별도의 사업 형태로 분류하고 있음
- 그러나 프랑스 관광법전에서는 야영 즉 캠핑을 관광법전에서 규율하는 유숙의 형태로서 호텔을 제외하고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 규정
 - 이에 따라 관광법전은 호텔과 캠핑장 등을 별도의 절로 구성하여 규율하고 호텔 및 캠핑장 이외의 숙박시설을 또 다른 절로 묶어서 규정
 - 다만, 각 절의 배치 순서는 기타 숙박시설에 대한 절이 캠핑장 등에 대한 절보다 앞에 위치

1. 호텔

- 프랑스 관광법전에서 개별숙박업은 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équipements)과 토지조성(aménagements)의 일부로 규정
 - 관광법전은 ‘호텔, 레스토랑, 카페와 음료 소매점’을 전형적인 관광 편의시설로 분류하여 가장 먼저 규정
 - 시설이나 설비로 호텔이라는 숙박업을 특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의 규정이나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은 관광법전에 없음
 - 다만, 총리령으로 각 호텔의 등급을 정하는 기준표를 정하도록 법전 제311-6조에서 정하고 있고 호텔 사업자가 등급 평가를 신청하여 등급을 받도록 규정
- 이 외에 호텔업에 대해 관광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각 섹션별로 ‘호텔 이용과 관련된 계약’, ‘호텔의 등급’, ‘제재’, ‘호텔경영자의 책임’이며, 호텔 이용과 관련된 계약은 ‘호텔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관계’와 ‘호텔경영자와 온라인 예약 서비스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관광법전이 규율





2. 호텔 및 캠핑장 등 외 기타 숙박시설

1) 관광레지던스

- ‘관광레지던스’(résidence de tourisme)란 관광법전 법률 제321-1조부터 제 321-4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프랑스 관광 숙박업종의 하나임
 - 이 숙박업의 정의에 대해서는 관광법전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시행령(데크레)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관광법전 데크레 제321-1조)
 - 관광레지던스란 등급이 매겨진 상업적 숙박시설로서 상시적 또는 특정 시즌동안의 영업이 가능
 - 관광레지던스는 단독 또는 공동 주택으로 이루어진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건물로 구성되며 가전·가구가 갖추어진 주거공간과 공동 사용이 가능한 주거 공간을 포함하는 형태의 숙박시설을 말함.
 - 관광레지던스의 주거공간은 일 단위, 주 단위 또는 월 단위와 같이 생활(domicile)을 위한 목적이 아닌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에게 제공됨.
 - 관광레지던스는 개인 사업자가 운영할 수도 있고 법인이 운영할 수 있음

2) 재활성화 관광숙박시설

- 프랑스 관광법전상 ‘재활성화 관광숙박시설’(Immobilier de loisir reha-bilité)이란 2001년부터 추진된 ‘관광숙박시설 재활성화 사업’(operation de rehabilitation de l’immobilier de loisir)의 결과로 지정된 숙박시설을 말함
 - 이 사업은 관광 시즌에 관광지에 인접한 숙박시설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의회나 지방자치단체 연합의 의결기관에서 의결하여 사업 구역을 지정하면 해당 지역 내 부동산 소유자나 민간 사



업자가 사업예산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관광숙박시설을 재개발할 수 있는 사업임

- 이 사업은 도시계획법전 법률 제318-5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관광법전은 이 조문을 원용하여 관광숙박시설 재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법전 법률 제318-5조에서 정한다고 규정(관광법전 법률 제322-1조)
- 이에 따라 사업에 대한 결정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의회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하여 설립한 지자체연합법인의 의결기구의 결정 권한에 속함
- ‘사업구역의 범위’, ‘사업예산이나 사업지원금의 지급 조건’ 등을 지자체 의회가 정하고 사업구역 내 자신의 부동산을 사업 대상으로 임대할 소유자를 지정하고, 사업 대상이 된 부동산을 재개발하여 숙박업을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함
- 소유자와 사업자 간의 임대계약 기간은 최소 9년임

3) 관광 레지던스 빌라주

- ‘관광 레지던스 빌라주’(village résidentiel de tourisme)는 관광숙박시설 재활성화 사업에서 지정된 사업 구역 내에 가전·가구가 설치된 복수의 주거공간과 공동 편의시설을 갖추어 지정된 숙박시설 단지를 말함(관광법전 명령 제323-1조)
 - 관광 레지던스 빌라주의 주거시설은 관광용 단기 임대 목적으로 운영됨
 - 하나의 빌라주는 한 개인이나 사업자가 빌라주 내의 부동산 소유자들로 부터 임대를 받아 운영하는데 임대 계약은 최소 9년
 - 임대 기간 중에 부동산 소유자가 관광 목적으로 해당 주거공간을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예약할 권리가 인정됨
 - 다만 임대 기간이 1년을 넘을 수 없음(관광법전 명령 제323-3조)





4) 부대시설포함 세대 임대

- 부대시설포함 세대 임대'(mobilier de tourisme)란 관광법전 법률 제324-1 조 이하에서 규율하고 있는 관광숙박의 한 형태로서 일 단위,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거주할 목적으로 숙박시설을 임대하는 관광객에게 임대하는 것을 배타적 목적으로 하는 가전·가구를 갖춘 빌라, 아파트, 스튜디오(원룸)을 말함
 - 이러한 형태의 숙박업은 해당숙박시설이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관광법전은 이러한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절차를 국가가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전 법률 제324-1조에서 결정권한을 가진 기구와 절차를 규정
 - 그러나 등급을 받는 것이 의무는 아니며 등급결정신청과 무관하게 임대인은 이러한 형태의 숙박시설 운영 사실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하도록 강제하고 있음(관광법전 법률 제324-1-1조 및 명령 제324-1-2조)
 - 신고의 내용은 임대인, 임대목적 숙박시설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시설 내에 갖추어진 가전, 가구의 목록 특히 침대의 수, 임대할 기간 등도 포함하며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신고하여야 함(관광법전 데크레 제324-1-1조)
 -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신고된 세대 임대용 숙박시설의 목록을 작성하여 기초자치단체 청사(시청)에 비치하여야 함

5) 민박

- 관광법전 법률 제323-3조 이하에서 규율하고 있는 '민박'(chambres d'hôtes)이란 기존 거주자가 자신의 주거를 유지한 채 주거의 한 방을 관광객에게 유료로 임대하고 거주에 필요한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형태의 관광숙박을 말함



- 민박도 부대시설포함 세대 임대와 마찬가지로 주거가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대업 운영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이를 구체화하는 관광법전 데크레 제324-13조는 민박업의 운영형태를 규율하면서 유숙과 아침식사를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정함
 - 또한 한 주거에서 최대 다섯 개의 방을 임대할 수 있으며 최대 15명까지 유숙할 수 있도록 규정
 - 민박업은 다른 사업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없고 해당 주거의 거주자가 관광객을 직접 맞아야 함
 - 법률에서 정한 기초적인 편의에 대해 데크레에서 구체화하기를 화장실, 욕실과 같은 기초적인 위생을 위한 시설과 침대 위생을 위한 침대보는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도록 규정
- 민박을 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관광법전은 전자적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신고절차를 간소화
 - 세대 임대와 마찬가지로 민박 형태로 신고되어 제공되고 있는 숙박시설의 목록을 기초자치단체 청사에 비치하여야 함

6) 바캉스 빌라쥬

- 프랑스 관광법전 법률 제32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캉스 빌라쥬’(villages de vacances)란 바캉스에 필요한 일반적인 시설과 용품, 스포츠 시설 및 단체 활동 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이 숙박시설 이용요금에 포함된 일체의 숙박업을 말함(관광법전 데크레 제325-1조 제1문)
 - 바캉스 빌라쥬는 비상업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관광법전은 바캉스 빌라쥬에 대해서 별도로 명칭 사용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같은 조 제2문)
 - 별도로 규정하였다는 것은 관광법전이 호텔과 캠핑장 등을 제외한 기타





- 숙박시설에 대해 일반적인 명칭 오남용 금지 조문을 두고 있는 것(법률 제327-1조)에 더하여 별도로 더 엄격히 규정한 것을 말함
- 일반적 금지 조문에서는 기타 숙박시설들에 대해 소비자의 착각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명칭사용을 금지하고 있어서 일반인이 선의로 명칭을 법령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
 - 반면, 바캉스 빌라주는 관광법전에 명시된 아래와 같은 조건(관광법전 데크레 제325-2조)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바캉스 빌라주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 첫째, 개별 또는 공동 유숙시설과 빌라주 관리 및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함
 - 둘째, 스포츠와 단체활동을 위한 공용 시설이 갖추어져야 함
 - 셋째, 취사를 위해서 숙소별 개별 식당 또는 부엌이 있어야 함
 - 식사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7) 바캉스 패밀리 하우스

- 바캉스 패밀리 하우스는 가족 단위 바캉스를 진흥하기 위한 사회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숙박시설
 - 프랑스 관광법전 상 '바캉스 패밀리 하우스' 형태의 숙박 유형은 법률 단위에서는 바캉스 빌라주와 동일한 장에 제목만 편재되어 있을 뿐 아무런 규정이 없음
 - 관광법전 명령 단위에서는 바캉스 빌라주에 대한 일반 규정에서 바캉스 빌라주에 해당하지만 비영리,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별도의 규정으로 규율한다고 규정(관광법전 데크레 제325-1조 제3문)
 - 한편 관광법전 데크레 제325-13조 이하에서는 바캉스 패밀리 하우스의 정의 및 인가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규정



- 따라 바캉스 패밀리 하우스는 영리 목적없이 사회적, 가족적 및 사회적 성격의 숙박시설로서 바캉스나 여가를 보내고자 하는 가족에게 제공될 목적으로 운영되는 숙박시설을 말함
 - 가족들 중에서도 소득수준 높지 않은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관광법전에서 명시
 - 다만, 가족 단위 바캉스 비수기에는 관계부처에서 공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이 아닌 관광객을 받을 수 있음
- 바캉스 패밀리 하우스는 유숙시설, 취사시설 및 가족 생활에 맞추어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패밀리 하우스에서 제공하는 유숙시설은 단독 세대 형태나 공동 세대 형태 모두 가능하며 단일 부지에 조성하거나 인접한 여러 대지에 분산하여 조성할 수도 있음
 - 야영시설이나 캠핑카와 같은 이동식 또는 조립식 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음
 - 패밀리 하우스에 사용된 공간은 학교 방학기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
 - 특히, 바캉스 패밀리 하우스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적 활동과 야외활동을 제공하여 아이들을 맡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관광법전 데크레 제325-16조 제1문)
 - 동시에 부모를 위해 사회생활 개발과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사회문화적 활동 프로그램과 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같은 조 제2문)

8) 산악 쉼터

- 프랑스 관광법전상 기타 숙박시설들 중 마지막으로 규정된 ‘산악 쉼터’(refuges de montagne)에 대해 법전 법률 단위에서는 산악의 고립된 장소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숙박시설을 쉼터라고 정의함





- 산악 쉼터를 규율하는 사항은 데크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 이에 따라 법전 데크레 제326-1조 이하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르면 쉼터가 설치될 수 있는 고립된 장소란 자동차가 다닐 수 없고 케이블카와 같이 일반 공중에 제공되는 설비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도 없으며 연중 일정 기간동안 전동차나 일체의 구조용 동력장치가 접근할 수 없는 곳을 말함(관광법전 데크레 제326-1조 제2문)
 - 쉼터는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집단적 숙소를 제공하는데 쉼터의 수용인원은 150명을 넘을 수 없음
 - 쉼터는 시설 내부에 일반인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을 담당(관광법전 데크레 제326-3조 제1문)

3. 캠핑장 등 유숙지 조성

- 관광법전 제3권 제3장에서는 ‘캠핑장, 캠핑카 캠핑지 및 기타 토지조성’을 규정
 - 관광법전 법률 제331-1조는 캠핑카 캠핑지와 캠핑지의 조성 및 개장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법전 법률 제443-1조에서 정한다고 규정
 - 본 조문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캠핑장 등의 조성은 도시계획법에서 절차를 정하고 있는 ‘부지조성 허가’(permis d’aménager)의 대상이 됨
 - 부지조성 허가란 프랑스 도시계획법전 제4권에서는 규율하고 있는 ‘건축, 부지조성과 철거’에 대한 허가 등의 절차에 따른 허가를 말함
 - 즉, 프랑스 관광법전에서 호텔업을 제외하고 가장 전형적인 관광 숙박의 형태로 규율하고 있는 캠핑장 등에 대한 조성 및 개장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법전에서 정한 허가 신청과 허가에 관한 절차 및 그 권한에 따라 규율
 - 도시계획법전에서 캠핑장 등을 도시계획법상 부지조성 허가의 대상으로 정한 제443-1조는 법전 제4권 제4절 제3장의 첫 조문인데 본 장은 ‘캠핑



장 등 관광용 유숙(hébergement)을 위한 부지조성에 관한 사항'을 네 개의 조문으로 규정

- 이 가운데 부지조성의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총리령에서는 특히 캠핑카 야영지 등 레저 유숙을 위해 조성하는 부지의 종류를 분류하고 각 부지별 시설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법전 법률 제443-4조에서 위임
- 이 위임에 따른 총리령은 2006년에 제정되어 도시계획법전 명령부에 편입

1) 캠핑 등에 대한 제한

- 도시계획법전 명령부 제1권 제1절 제1장에서는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면서 제4섹션에서 '캠핑장 등 유숙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에 따라 부지조성이 필요한 관광 유숙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4개 종류로 구분

- 레저용 간이 주거(habitation légères de loisirs): 명령 제111-31조부터 제111-32-1조
- 레저용 이동 주택(résidences mobiles de loisirs): 명령 제111-33조부터 제111-36조
- 캠핑카 야영(carvanage): 명령 제111-41조부터 제111-43조
- 캠핑(camping): 명령 제111-41조부터 제111-43조

- 여행용 텐트가 레저용 간이 주거의 전형적인 형태이며 레저용 이동 주택이란 독립된 전동 운전 장치없이 다른 차량에 부착 및 견인하여 캠핑장에서 사용하는 캠핑카와 유사한 간이 주거를 말함
 - 일반적인 캠핑카와 달리 도로에서의 통행이 금지됨
 - 도시계획법전에서는 텐트나 캠핑카를 이용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각각 제한적으로 규정
 - 이하 도시계획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캠핑카 야영이나 캠핑에 관한 사항은 이러한 형태의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나 방식의 한계를 규정





- 이처럼 도시계획법전에서 지정된 장소 외에서 이루어지는 텐트나 캠핑카를 이용한 유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성 및 운영 허가를 받은 캠핑장 등에서만 이러한 형태의 유숙이 허용됨
- 캠핑장 등 관광 유숙을 위한 부지조성 기준 등은 같은 법전 명령 제4권 제4절 제3장에서 규정

2) 캠핑장 등의 설치 절차

- 도시계획법전 명령 제4권 제4절 제3장은 ‘캠핑장 등 관광 유숙을 위한 부지조성에 관한 특례 규정’이라는 제목 하에 부지조성허가 절차와 허가 신청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
 - 특례라는 장의 명칭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본 장은 도시계획법전에서 정하고 있는 부지조성공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절차에 더하여 캠핑장 등에 특별히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
 - 이에 따라 캠핑장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반 부지조성허가 신청 서류에 더하여 환경법전 명령 제12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명령 제443-5조)
 - 캠핑장 등의 설치에 대해서도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도록 것은 2015년 4월 27일 테크레로 결정된 것
 - 다만 이 환경영향평가 실시 의무는 환경분야에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 행정청이 환경법전에서 정한 조건(환경법전 명령 제122-2조와 제122-3조)에 따라 면제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문으로 평가를 대체할 수 있음
 - 또한 캠핑장 등의 설치 허가 신청에는 일반 부지조성허가 신청과 달리
 - 캠핑장 등에 설치되는 시설의 시각적 효과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명령 제443-2조 제1호),
 - 캠핑장 내 원활한 통행을 조직화하기 위한 조치(같은 조 제4호) 등을 명시하여야 함



- 허가 신청서류로서 허가신청서 상에 명시된 부지이용계획을 준수할 것에 대한 서약서가 포함되며,
- 캠핑장 등이 특정 시즌에 개장하는 경우에는 개장 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명령 제443-3조)



법제분석지원 IssuePaper 15-21-③

외국의 숙박업 분류체계에 관한 법제분석

발행일 2015년 10월 30일

발행인 이 원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34(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044)861-0300 F.(044)868-9913

등록번호 : 1981.8.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1.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2. 이 책자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